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 검토보고

2024. 2. 16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 : 한 상규

1. 신청일 및 제출자

연번	신청일	연구단체	대표자
1	2024. 2. 13.	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	이관우
2	2024. 2. 13.	성북구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	이호건
3	2024. 2. 13.	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	김경이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5조 제2항 ‘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’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3개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심의대상 연구단체

- 가. 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
나. 성북구 느린 학습자 1) 지원 방안 연구모임
다.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례법령 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나. 편성예산 : 1,500만원 (의정운영공통경비 18,205만원 10% 이내)

1) 느린학습자: 좁은 의미로 경계선지능(IQ 71~84)을 가진 사람, 넓은 의미로는 또래나 가진 지적능력에 비해 학습의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을 지칭

5. 검토보고

■ 등록신청서 및 활동 계획서 요약

1) 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

구 분	내 용	비 고
명 칭	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	
대표 및 간사	대표 : 이관우, 간사 : 임현주	
구 성	5명	
목 적	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지역 현황 및 법적·제도적 환경 파악과 지자체 역할 모색	
추진기간	8개월 (3 ~ 10월)	
세부일정	별지 제3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 참조	
연구활동비	기초자료조사비 등 500만원 - 자료 수집비, 여비, 급식비, 회의비, 강사료, 전문 자문비 등	

2) 성북구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

구 분	내 용	비 고
명 칭	성북구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	
대표 및 간사	대 표 : 이호건 간 사 : 강수진	
구 성	6명	
목 적	성북구 느린학습자(경계선지능인) 실태조사 및 선진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지원방안 모색	

추진기간	8개월 (3 ~ 10월)	
세부일정	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참조	
연구활동비	기초자료조사비 등 500만원	
연구용역비	20,000천원	

3)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

구 분	내 용	비 고
명 칭	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	
대표 및 간사	대표 : 김경이 간사 : 고영옥	
구 성	7명	
목 적	성북구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증대에 맞추어 체육 활동 기반구축을 통해 스포츠 친화도시 수립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마련	
추진기간	8개월 (3 ~ 10월)	
세부일정	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참조	
연구활동비	기초자료조사비 등 500만원	
연구용역비	20,000천원	

■ 검토의견

- 2024년 2월 ‘성북구 재개발·재건축 연구모임’ ‘성북구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’ ‘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’ 등 3개 연구단체가 계획서를 제출 하였음.

- 2013년 11월 7일 제정된 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’(이하 조례)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,
- 심의 내용은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, 연구 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 계획의 승인,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,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임.
- 이미 접수된 3개의 ‘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’를 검토한바 연구단체 명칭, 구성, 목적, 추진 방향, 추진 기간, 세부 일정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‘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예산 (18,205만원)의 10% 이내에서 지원하고, 각 의원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’로 규정하고 있으며,
- 조례 제10조 제2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의원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‘1.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, 2.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, 강사료, 전문가 자문경비, 세미나·공청회·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’로 규정되어 있으며, 3개의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소요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됨.
- 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이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,
- 3개의 연구 활동 계획서를 검토 한 결과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함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 됨.